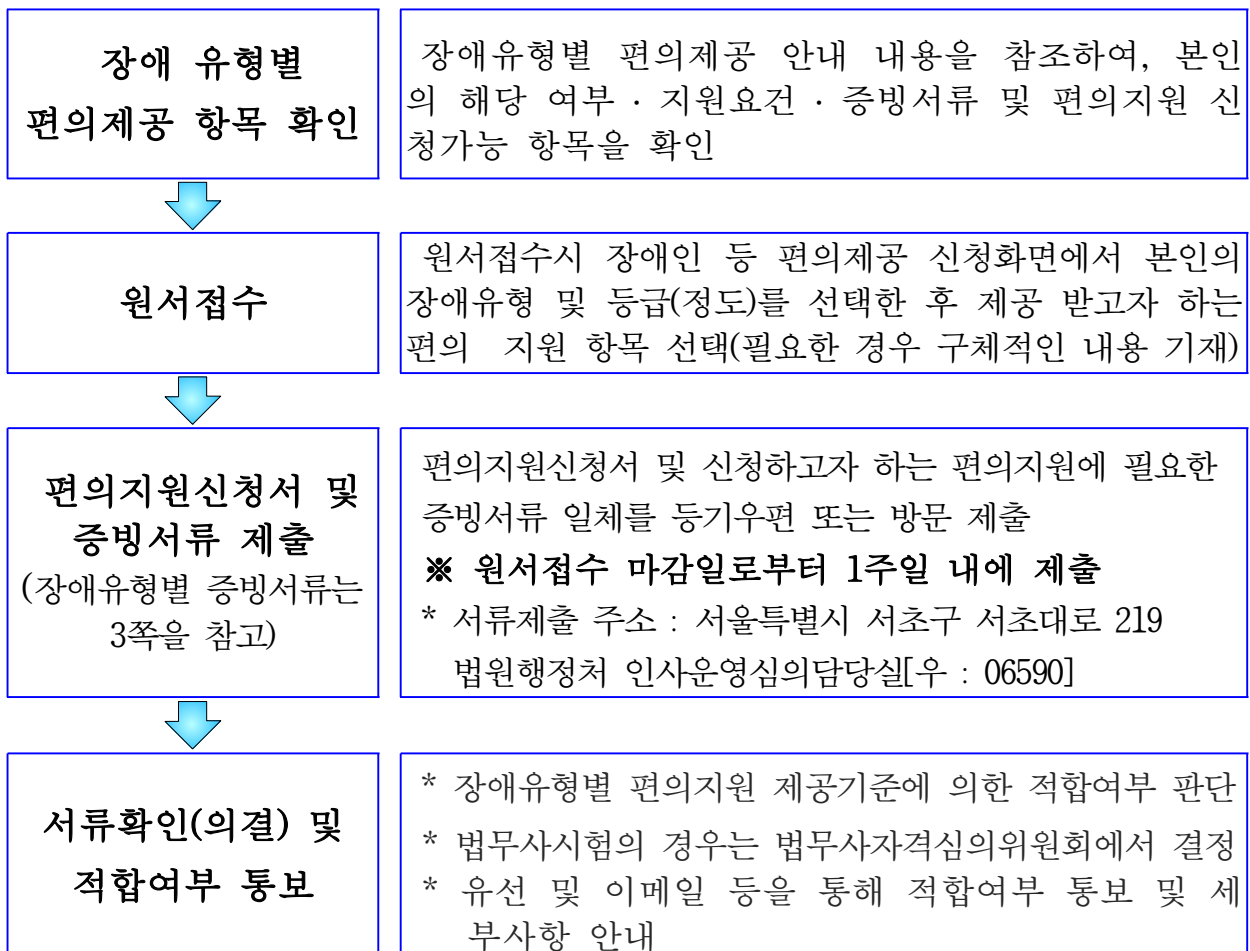


2019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기준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법원행정처 시행 각종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3 편의지원 제공 관련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3쪽)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해당여부, 증빙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참조 후,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안내(3쪽)에서 편의지원항목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 및 임신부 수험생은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 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4.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과민성방광증후군 환자인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각기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각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논문형 필기시험에 한함).
5. 2018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 2017년도 서류 제출자는 증빙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6. 시험 진행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운영심의담당실(02-3480-1769)로 문의하신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4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안내

장애유형		편의 지원 항목	제출 서류
시각장애	- 1급~2급 - 3급2호,4급2호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시험시간 연장 (선택형 필기시험 1.7배, 논문형 필기시험 1.5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희망자) · 확대문제지·답안지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단, 3급2호,4급2호는 점자사용 필요성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3급~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시험시간 연장 (선택형 필기시험 1.5배, 논문형 필기시험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시각장애 6급만 해당)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시험시간 연장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뇌병변 장애 및 지체장애	중증 뇌병변 (1~3급) 및 중증 상지지체 (1~3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높낮이 조절책상(휠체어이용자) · 대필(선택형 필기시험) · 노트북(논문형 필기시험) · 시험시간 연장 (선택형 필기시험 1.5배, 논문형 필기시험 1.2배) ·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경증 뇌병변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높낮이 조절책상(휠체어이용자) · 노트북(논문형 필기시험)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4급~6급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시험시간 연장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경증 상지지체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노트북(논문형 필기시험)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하지지체	· 별도 시험실 배정 · 높낮이 조절책상(휠체어이용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청각장애	2급~6급	· 수화통역사 배치 · 보청기 등 지참 허용 ·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타장애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높낮이 조절책상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증후군	· 별도 시험실 배정 (논문형 필기시험)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논문형 필기시험)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서로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함)

○ 확대문제지 제공 : A3 규격의 118%(14point)로 확대된 문제지

○ 확대답안지 제공 :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기입형 중 택일

○ 축소문제지 제공 : A4 규격의 82%(9point)로 축소된 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만 신청)